

20대 대선, 이주여성이 말한다

2022. 2. 11. (금) 오후 2시
온라인(zoom)

주최 두레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관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20대 대선, 이주여성이 말한다

발표

1부

유권자, 이주여성이 말한다

김나현(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

왕지연(한국이주여성연합회)

2부

현장 경험을 통해 본 이주여성 정책 요구안 : 체류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피해자 보호

김민정(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태정(두레방)

사회

한가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대 대선, 이주여성이 말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22년 3월 치러지는 20대 대선에서 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현장에 기반한 이주여성 관련 정책을 요구합니다.

국제 이주 증가에 따라 외국계 한국인(귀화자)이 유권자로서 한국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여성은 자신들의 삶을 타자에게 종속되도록 하는 차별적 정책을 꾸준히 마주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실현해나갈 기반 마련이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모든 여성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이주여성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주여성이 처한 현실과 관련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합니다.

2022. 2. 8.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대 대선, 이주여성이 말한다

1부

유권자, 이주여성이 말한다

김나현(베트남,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

왕지연(중국,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이주여성 노동자,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김나현 (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1995년 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1997년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귀화하여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16대 대통령 선거에 처음 투표했습니다. 그때 설렜던 마음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후 빠짐없이 지방선거며, 대통령 선거며 모두 투표했습니다. 투표하러 갈 때마다 정의롭고, 인권 감수성이 높고, 경청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며,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유권자로서, 그리고 저 역시 산업연수생 노동자로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주여성 노동자를 대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께서는 이주여성 노동자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살피고 실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9월, 저는 같은 해 5월 농업 분야에 일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이주여성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성은 어느 날 아침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커피를 타려고 준비하는 동료를 도와주려고 물을 팔팔 끓인 주전자를 드는 과정에서 미끄러져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오른쪽 어깨부터 옆구리까지 큰 범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했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험 미적용

노동자가 1인이더라도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지만 농업 분야는 5인 이상만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해도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의 이주여성 노동자는 산재도 신청하지 못한 데다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서 건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보험 적용 없이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장의 이주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개선해야 하고,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노동자임에도 직장건강보험 가입 제외

위 이주여성 노동자가 근무한 농장의 농장주는 사업주가 아닙니다. 농장주는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농업경영등록확인서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농업노동자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체류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지역가입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수입, 재산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평균보험료 약 14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모순적인 내용입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E-9) 노동자임에도 직장가입이 되지 않는 문제는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3. 임금 착취

위에 언급한 이주여성 노동자를 비롯하여 농장에서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임금착취를 당합니다. 하루 9.5~10시간을 일하는데 실제 받는 월급을 계산해보면 기본급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장주들이 매일 1.5시간 이상의 임금착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농장주들은 휴게시간을 은닉하거나, 노동시간을 조작하여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은 3시간이지만 실제로는 1시간밖에 쉬지 못하며 일하는 것이 농업분야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4.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사업장변경 가능

위 이주여성 노동자는 산업재해를 당하기 이전 일이 너무 힘들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싶었으나, 농장주가 허락하지 않아서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했고 산업재해를 당하고 난 후 농장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자 그제서야 농장주가 사업장 변경을 동의했습니다. 이렇듯 이주노동자는 임금 체불이나 폭행을 당하고 이것을 입증해야거나, 위의 이주여성 노동자처럼 더이상 사업주에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가 노동자 이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이 합헌이라는 믿기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고용허가제도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5. 가설 건축물,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닙니다

위 이주여성 노동자는 한 달에 28만원을 내면서 고용주가 제공해준 허름하고 잠금장치도 없는 컨테이너에서 지내왔습니다. 고용주는 마음대로 숙소에 침입했고, 고용주의 지위를 으시대며 노골적인 성추행을 하곤 했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숙소에서 지내야 하니 매일 밤 불안 속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2020년 겨울 어느날, 캄보디아 이주여성 노동자 속행씨는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농장주가 제공해준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에 '2021년 1월 1일부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고용허가 불허' 및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변경 허용'이라는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문제점 개선이 된다는 것이 참 가혹한 현실이며, 위의 개선된 조항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만난 단 한 명의 이주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현재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나 알 수 있습니다. 안전한 노동환경, 건강한 삶, 일하는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 사업장 이동의 자유 그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숙소, 어떻게 보면 사람의 권리 중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20대 대선,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개선해 나갈 대통령을 원합니다.

다문화 정책, 건의합니다

왕지연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에 중국에서 왔고, 2006년에 귀화했습니다. 귀화하고 주권을 행사했던 첫 선거는 지방선거였습니다.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집에 온 홍보물 잘 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홍보물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후보자 얼굴 보고 착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았던 기억이 납니다.

선거 관련 교육이 있어서 첫 투표를 하는 이주민 유권자들이 한국의 정치제도, 선거와 공약을 잘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첫 투표를 하고 내가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을 직접 뽑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해서 살짝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투표했습니다. 이제는 지역에 필요한 복지, 자녀 교육, 다문화 등 구체적인 정책이 제가 투표하는 기준입니다.

한국인과 가족을 이루고 사는 이주여성 유권자로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바라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증가추세가 이어지자 다문화라는 명칭이 법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법이 <다문화가족지원법>입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과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고 정의하고,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회부적응,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자녀교육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되었습니다.

법 제정 이후 그동안 많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수행해오고 있는데요, 개선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제안하려고 합니다.

1. 예산 편성 및 사용의 합리성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와 전국 984개 지자체에서 다문화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문화 예산으로 보이지만, 그 예산 중 정작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제도로서 부여되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문화 관련 기관을 운영하고, 선주민으로 채워진 다문화 직종 종사자의 임금 등으로 많이 집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다문화 예산이 다문화가족에게 퍼주기식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는 반다문화정서를 부추기는 부정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국민에게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고지하는 것이 반다문화정서, 다문화 혐오를 막고 나아가 다문화 인식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2.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교육과정 운영 시급합니다.

행안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2020년 말을 기준으로 이미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성장하여 사회적으로 편견과 차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선주민 자녀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놓여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곧 군 입대 및 취업 시기에 접어들면서 사회로 뛰어듭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치열하고 냉정한 사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경쟁 사회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성공적 사회 진출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 복잡하고 다난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술 교육 과정 운영을 촉구합니다. 물고기를 먹여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책적 직업 교육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3. 친정 부모님들의 비자 연장 및 체류 자유화를 요구합니다.

결혼이민자는 이미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주여성들은 모국에 친정 부모님을 남겨두고 한국으로 들어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기혼여성들이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모두 모실 수 있듯이 이주여성들도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모두 모시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도상으로는 만1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정에게만 친정 부모님의 장기 체류를 허락합니다. 아이가 커감과 동시에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 늙어 가시는데 아이가 10살이 넘었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비자를 주지 않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딸, 사위, 손주가 보고 싶을 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면 언제나 같이 살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력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친정 가족이 와서 체류자격 외의 노동을 하는 것이 정부 차원의 우려라면 체류 불허가 아닌 다른 방식의 제한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제 곧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 입대를 시작합니다. 군 생활이 마무리 되면 곧바로 취업이나 창업 등 일자리를 찾아 사회로 진출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선주민 청년들과 공정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주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폭넓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소중하게 키운 내 딸이 참 시집 잘 갔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며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평생 속 썩이다 다른 나라로 시집까지 간 딸이 늦게나마 아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늦게나마 효도를 선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지와 개입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대 대선, 이주여성이 말한다

2부

현장 경험을 통해 본 이주여성 정책 요구안

: 사회보장권, 체류권, 노동권,
가족 결합권, 피해자 보호

김민정(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태정(두레방)

이주여성 정책 요구안

1. 사회보장권

- 1)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모든 결혼이주자 공공부조 확대
- 2) 모성과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외국 국적자 범위 확대

2. 체류권

- 1) 결혼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 2) 외국 국적자 간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특별 체류 조치 필요

3. 노동권

- 1) 이주여성 노동자의 인권 보호
- 2)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의 이주여성 노동권 보장

4. 가족 결합권

- 1) 결혼이주여성 가족 결합권 인정

5. 성착취 피해 이주여성 보호

- 1) 성착취 피해 이주여성 보호

1. 사회보장권

1)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모든 결혼이주민 공공부조 확대

< 현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외국인의 범위를 “한국민과 혼인신고”하고 임신 또는 미성년자 자녀 등과 동거하는 자 그리고 난민인정자로 한정하고 있음.

- 공적부조와 대상 이주민 (2019. 제2차 이주민권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분류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 -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 양육 중 - 배우자의 한국 국적 직계존속과 동거 중 ○ 결혼이민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이혼 또는 사별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 양육 중 -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 임신 중 ○ 난민인정자
긴급복지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한국 국적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 후 한국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인정자 ○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 ○ 본인 귀책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한부모가족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국적을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 이런 사유로 한국민과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민, 남편이 사망하고 미성년자 자녀가 없는 이주여성, 자녀가 성년이 되는 한부모 결혼이주민, 국민의 미성년 혼인외자를 양육하고 있는 한국민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주여성은 한국 사회 공공부조 지원에서 배제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에 규정하는 보장시설은 여성복지,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수급권자가 아니면 수급 지원이 제한되다 보니, 입소 등이 어려운 사례가 발견됨.

< 사례 >

- 이혼 후 한국민의 자녀를 양육한 A는 영주자격자(F-5)로 지병 등으로 현재 수급권자임. 아이가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18세가 됨. A는 아이가 성년이 되어 자신의 수급권 자격이 상실될 경우 생계유지 등에 대해 염려함.
- 한국민의 혼인외자를 양육하고 있는 C는 한부모가족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혜택 받을 수 있는 정부 시책 등에서 모두 제외됨.

< 정책 요구안 >

-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은 자녀 유무, 자녀의 나이에 관계 없이 공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한국인의 혼인외자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 이주여성(F-6 또는 F-1)의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관련 규정 개정 필요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정 필요.
- 사회보장시설(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숙인 시설)에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입소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명문화하는 제도 개선 필요.

2) 모성과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외국 국적자 범위 확대

< 현황 >

- 전체 등록 외국 국적자 1,956,781명 중 영주자격자(F-5) 8.6%, 재외동포자격자(F-4) 24.5%, 방문취업자격자(H-2) 6.4%임(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2021년 12월 통계월보).
- 배우자와 자녀들과 (F-1)과 함께 정주 또는 장기체류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유지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 장애인보호 및 재활, 모성보호, 보건의료, 돌봄 등에 취약 계층 지원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함.

- 사회서비스와 대상 이주민 (2019. 제2차 이주인권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분류	대상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결혼이민자 ○그 밖에 외국 국적 산모 중 거주(F-2), 영주(F-5)비자 소지자
보육예산 지원	○한국 국적 자녀를 키우는 결혼이민자 ○난민
아이돌봄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
아동급식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결식 우려가 있는 외국 국적 아동
장애인 지원	○재외동포 ○재외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노숙인 시설	○해당없음

< 정책 요구안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 이주민 가족 범위를 확대하여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인 신생아와 산모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외국국적 가족을 포괄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들의 아동 돌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체류자격과 관련 없이 학령기 아동·청소년 돌봄 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 필요.

2. 체류권

1) 결혼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 현황 >

- 2021년 12월 기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은 남녀 모두를 포함하여 316,729명으로 이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혼인 귀화자는 148,118명이며, 외국 국적으로 비자 상태인 경우 168,611명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53%가 귀화하지 않은 상태임(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2021년 12월 통계월보).
- 2021년 1년 동안 F6(결혼이민)비자의 미등록(‘불법체류’) 신규 발생 인원은 1,204명. 2020년에는 1,336명으로 결혼비자에서 1년에 천명 이상의 미등록 체류가 발생하고 있음(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2020년 12월, 2021년 12월 통계월보). 이는 결혼비자의 체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반증함.
- 결혼이주여성이 대부분인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는 한국인과의 결혼과 함께 안정화 되는 형태가 아님. 현재의 외국인 배우자 체류 정책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관계에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이민 비자는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사별·이혼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과정으로 체류가 이루어짐. 배우자 사망·이혼하거나 자녀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음.

- 결혼이민(F-6) 비자의 분류 (2022.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약호	분류 기준
F-6-1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 (사실상의 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체계는 위의 세분류에 따라 귀화(혼인간이 귀화)절차도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음. 사별·이혼 등 한국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귀화 필기시험의 실시, 복수 국적 취득 기회 차단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생계와 병행하기 어려운 시간과 노력을 요하고 있음. 한편, 혼인귀화 심사 기간의 장기화(2022년 2월 기준 약18개월)는 또 다른 어려움 중 하나임.

< 정책 요구안 >

- 결혼이주민의 시민권으로서 체류 안정 보장하도록 정책 변화가 필요. 현행 자녀 출산과 양육, 배우자 동거 여부와 조력에 따라 체류 자격 유지·연장과 귀화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결혼이주민에 대한 가부장적 시각을 정책화 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한국인 배우자의 통제 수단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음. 결혼이주민이 자력으로 체류, 귀화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
- 한국인 배우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귀화 과정 폐지하고 동일한 귀화 과정으로 설계해야 함.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와 다름없는 과도한 자격 요건 완화, 귀화 심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으로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환경 확보가 필요.

2) 외국 국적자 간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특별 체류 조치 필요

< 현황 >

- 전체 등록 외국국적자 1,956,781명 중 영주자격자(F-5) 8.6%, 재외동포자격자(F-4) 24.5%, 방문취업자격자(H-2) 6.4%임(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2021년.12월). 이들 가족은 주체류자격자에 종속된 거주(F-2) 또는 동거(F-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음.
- 영주자격자의 배우자로 자녀와 함께 한국에 장기 거주하여도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별거할 경우 자력으로 체류자격 연장이 쉽지 않음.
- 가정폭력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흑시나 남편의 체류자격 연장에 영향을 미칠까 봐 경찰에 신고하거나 처벌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음. 이런 사례는 잘 드러나지 않아 실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정책 요구안 >

-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들의 경우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와 같이 상황에 따라 체류자격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
- 가정폭력피해를 호소하는 이주여성의 경우 안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하여 생계 걱정 없이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배려가 필요.

3. 노동권

1) 이주여성 노동자의 인권 보호

< 현황 >

- 외국 인력 정책에 따라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노동자 규모는 고용허가제(E-9 비자)의 10% 미만인 2만여 명, 방문취업제(H-2 비자)의 40% 수준인 6만여 명 정도임(법무부, 202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사업장 이동을 최대 3회’까지 가능한 제도임. 사업장 이동 제한은 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이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음. 특히 젠더기반 폭력 피해 이주여성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폭력 피해 사실 공개의 문제, 입증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이동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그 외에도 ‘비닐하우스 기숙사’로 상징되는 안전하지 않은 숙소로 인한 성폭력 위험 노출과 더불어 일상적인 ‘침’의 불가능한 기숙사 문제, 화장실과 욕실의 위생 수준 등이 이주여성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7년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기숙사 기준 없이 기숙사비 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열악한 숙소 환경임에도 기숙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외국 인력 정책에서 여성 노동자를 고려한 임·출산, 젠더 기반 폭력 등에 대한 정책이 없음.

< 정책 요구안 >

- 이주여성 노동자 성폭력 피해 상담과 신고만으로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보장. 더불어 안전한 기숙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 명문화.
- 여성이주노동자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전담 상담 창구 마련 젠더기반 폭력 피해 여성 노동자에 대한 법률 조력과 통역, 관련 지원자가 동석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보장.
-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취업 교육 과정에 여성 인권 관점의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정보의 제공.

- 간병·가사, 식당, 모텔 청소 등 하급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고용조건, 젠더 기반 폭력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
- 고용허가제 여성 노동자의 임신, 출산에 따른 산전산후 휴가 보장 및 모성권 보호 방안 마련.

2)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의 이주여성 노동권 보장

< 현황 >

-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은 결혼이주여성의 주요 취업처 중 하나임. 대표적인 곳으로 가족센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3개소/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25개소/여성가족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10개소/고용노동부),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여성가족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법무부) 등이 있음. 결혼이주여성은 정부 재원의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에서 통상 이중언어 지원, 통번역 업무를 하고 있음.
-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의 통번역 관련 업무는 이주여성이 이중언어를 자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단일 직군으로 이주여성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직업이라 할 수 있음.
- 이중언어를 자원으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에 대한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 이주여성 통역 인력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일부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은 통번역 업무를 분리하여 통번역 지원 업무 외의 다른 업무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며, 승진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정책 요구안 >

-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이주민 지원 기관에서 일하는 이주민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 이주여성이 다른 업무로 전환과 승진 가능한 구조 마련.
 - 국비 지원 이주민 지원기관 관리직에 이주 배경 관리자 30% 이상 할당제 도입
 - 통번역 업무로 제한한 직무 배치 철폐
 - 자격 조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리직에 우선 이주여성 선발
 - 이주배경 센터장 배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가족 결합권

1) 결혼이주여성 가족 결합권 인정

< 현황 >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여러 조건에서 한국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인정 받고 있음. 그러나 결혼이주민의 본국 가족의 결합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음. 현행 제도에 의하면 귀화를 통하여 법적 한국인인 결혼이주민의 경우에도 본국의 원가족과 장기적으로 같이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귀화한 결혼이주여성이 친정 부모님을 장기 초청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효를 실천할 수 없는 상황임.
- 현행 외국인 체류 제도에서 결혼이주민의 원가족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자녀 양육 지원에 한정하고 있음. 이 경우에도 자녀 연령 만10세 3월까지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친정 부모님이 장기적으로 국내 체류할 수 없음(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2022.1)). 이러한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의 친정 가족을 자녀 양육 등 돌봄에 동원하면서도, 자녀 연령 제한을 둠으로써 친정 부모님의 노후 부양을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음.

< 정책 요구안 >

- 결혼이민 비자 체류 연장(F-6-3)에서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라도 그 외국인이 국민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및 부양 관련 입증서류 징구 후 F-6-3으로 1년 범위 내 체류허가'를 하고 있어 사실상 결혼이주여성에게 시부모 부양을 권장하고 있음.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친정 부모를 한국에서 부양할 방법이 없음. 심지어 귀화를 통하여 법적 한국인임에도 자신의 가족에 대한 체류권을 가질 수 없음. 결혼이주민의 가족 결합권을 인정하여 필요시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부모를 부양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함,

5. 성착취 피해 이주여성 보호

1) 성착취 피해 이주여성 보호

< 현황 >

- E-6-2비자 소지 이주여성 : 공연 목적으로 입국한 비자이나 클럽 내 공연이 아닌 성매매 강요 당함. 주스 구걸 강요,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을 빼앗긴 생활, 이탈보증금 명목으로 일부 돈이 유보되어 피해가 있어도 신고, 탈출 할 수 없으며, 커뮤니티 활동(교회, 식당)과 이동의 자유가 없는 감금, 감시된 생활을 하고 있음.
- 사증면제 소지 이주여성: 2000년대 중반부터 태국마사지가 유행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 받고 있음. 취업 사기로 한국에 입국하여 마사지 업소 내 성매매 강요가 일어남. 빚을 갚을 때까지 여권을 압수당하며 감금 또는 감시당하는 생활. 그 외 사증면제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여성들이 마사지업소 및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강요가 일어나고 있음.

< 정책 요구안 >

- 적극적인 예방 활동 : 성착취 구조로 인하여,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받기 어려움. 온라인, 오프라인(공항 등)에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 신고 과정과 지원 활동 홍보.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와 시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캠페인 활동 필요.
- 성착취 구조를 파악하는 수사를 위한 전담반 필요 :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자발적인 행위자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 성착취 피해 구조를 파악하는 조사가 필요. 성매매, 유흥업소 현장에서 단속되는 이주여성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4조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 의무화. 전담반은 성착취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조사 후 법적 조력 및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단계에서 지원 단체에 연계 필요.
- 출입국외국인청의 인권침해 상담 의무화 : 수사기관의 조사와 상관없이 출입국외국인청의 자체 인권침해 상담 의무화. 상담 후 피해 내용이 있으면 체류와 상관없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에 연계.
-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류자격 보장 : 법률과정에서만 지원되는 체류보장이 아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 심리적 치료회복 등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보장.

- 인신매매 처벌법 제정 : 수사기관은 법에 따라 수사를 함. 즉 2023년에 시행되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수사 과정 중 피해자로 인지가 될 가능성이 없음. 인신매매 처벌법을 제정하여 수사기관이 직접 성착취 현장을 조사하고, 가담한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을 하여 그 안에서 피해받은 이주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